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0.

발 의 자 : 송재봉 · 박지원 · 전용기
김문수 · 황명선 · 박 정
이주희 · 안태준 · 박정현
강득구 · 남인순 · 김우영
김기표 · 윤종균 · 박지혜
이용선 · 김남희 · 최혁진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성폭력 · 가정폭력 · 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주거 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이전 지원 사유에 해당 피해 유형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, 포함되더라도 그 범위가 중대한 위해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성폭력 · 가정폭력 · 스토킹 피해자 모두를 주거 이전 지원 대

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6항)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항 중 “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”를 “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 또는 피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거주지 노출로 인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

가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

나.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

다.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주거지원 등) ① ~ ⑤ (생 략) ⑥ 통일부장관은 <u>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·신체 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 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 호대상자의 의사,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 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20조(주거지원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<u>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해 또는 피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<u>거주지 노출로 인한 생명· 신체에 중대한 위해</u> 2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</u> 가. 「 <u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제 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나. 「 <u>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</u> 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다. 「 <u>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제 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
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